

순천대학교 계절학기운영규정

개정 1982. 3. 1
개정 1989. 11. 7
개정 1991. 3. 1
개정 1991. 11. 25
전부개정 2015.10.15.
개정 2019. 3.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학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설 교과목) 계절학기에는 교육과정에 따라 공통적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을 우선적으로 개설한다.

제3조(수업편성)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의 수업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고, 1일 4시간까지 수업시간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특성화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1일 4시간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5.)

제4조(강의 개설) 계절학기에는 원칙적으로 수강하는 학생이 20명 이상인 교과목에 대하여 개설한다. 다만, 교육과정 변경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강하는 학생이 20명 미만인 교과목도 개설할 수 있다.

제5조(수강자격) 이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및 학칙 제67조에 따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교 재학생은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제6조(수강학점) 계절학기에 수강을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제7조(수강료) ①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한 교과목이 폐강되거나, 수강한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군 입대, 장기질병)로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수강 취소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폐강 교과목 수강 및 수업 개시일 전일까지 : 납부한 수강료 전액
2. 총 수업일수 3분의 1 전일까지 : 납부한 수강료의 3분의 2
3. 총 수업일수 3분의 1 부터 총 수업일수 2분의 1 전일까지 : 납부한 수강료의 2분의 1

③ 수강료는 결석 등의 이유로 환불·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8조(강사료 등의 지급) 강사료, 실험실습비 등 계절학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

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대학교 학칙 및 교학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 10.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5.> (순천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별표 1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순천대학교 계절학기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수업편성) 본문 중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의 수업기간은“4주 이상으로”를 “3주 이상으로”로 한다.

[별지 서식]

계절학기 수강료 환불신청서

대 학 명	학과(부)명	학 번	학년	성 명	연 락 처
[수강료 반환 신청 내역]					
교과목명	교과목코드	분반	학점	수강료 환불금액	
합 계					
[수강료 환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본인)	비 고		
※ 수강취소 사유(구체적으로 기술, 증빙자료 첨부)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학과(부)장 :	(인)
순천대학교 총장 귀하					
학사지원과 처리일자:					

- ※ 신청(접수) 기간 : 총 수업일수의 1/2 경과 전까지(지정한 기간에 한함)
- ※ 신청 학생 소속학과(부)장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는 학사지원과(대학본부 1층)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